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규약

제1조(규약내용)

본 사용규약은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주차구획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간 · 할인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 사용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전용	건물식공영(전일)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24시간	24시간
사용요금	40,000	30,000	20,000	33,000	50,000

• 요금할인대상자

할인율	80%	50%	30%	100%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4,6,12,15,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 •고엽제후유증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명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cc미만 경형승용 차량 •5.18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명의 차량 •저공해차량(1~3종) •착한임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자원봉사자 (본인명의차량) •병역명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납세자 (표지발행일 기준 1년)

※ 장애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본인명의 차량에 한함.

※ 우수자원봉사자 : 관악구조례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해 할인, 기간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

• 가산점 부여

1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표지부착여부 상관없이) 가점 1점 부여	2019년 7월 하반기 수시배정부터 배점 부여
2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가점 1점 부여	
3	모두의 주차장 참여실적(0~365시간) 가점 1점 부여	2022년 1월 상반기 수시배정부터 배점 부여
4	주차장 이용기회 공평성에 의거한 배정탈락(연속) 1회 탈락 가점 2점 부여	

제3조(배정순위 및 방법)

1.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우선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4,6,12,15,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 고엽제후유증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제외 (단, 대상자 본인명의 차량으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 해당동에 주민등록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함)
- 1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기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2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기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
- 3순위 : 1~2순위자를 제외한 거주자
- 4순위 : 시행 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 불법주정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2.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방법은 관악구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의거 한다.

•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 (상가우선지역은 상가우선배정기준에 의함)

※ 배정기준의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동 최초 전입일을 기준하며, 타지역 변동 시 해당동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제4조(주차구획 관리 및 차량파손 등의 책임)

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구획 사용자에게 있으며,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 등도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변경 및 취소)

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변경사항 통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짐.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구획 내 장애물 적치 등)로 본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
2. 주차구획 이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사용 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4.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배정을 받았을 경우
5.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 적발 시
6.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
7.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8.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제한 시 현재 및 다음 배정신청에서 제외

제7조(기타)

본 규약에 이외의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규정 및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gwanakgongd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